

[별표 1]

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
계획서(제3조 관련)

1. 식품이력추적관리(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
 - 가. 식품이력추적관리 주전산기 운영체제 종류
 - 나.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언어
 - 다. 이력정보(원료, 생산, 품질검사, 입·출고) 기록·관리 방안
 - 라.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체계
 - 마. 식품이력정보의 추적성 확보 방안
 - 바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방안

2.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식품 관련 사항(제조·가공 및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에 한함)
 - 가. 제품명
 - 나. 상품바코드(GTIN)번호(바코드와 조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 한 함)
 - 다. 포장단위
 - 라.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생산 내역(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의 경우 수입 내역)
 - 마.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출고내역[제품 개수, 중량(kg)]

3. 주요 물류·유통·판매점 현황
 - 자체 물류창고 명칭 및 소재지(대리점, 창고, 지점 등)

4.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위해발생 시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·폐기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59조 제1항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1조의3제1항이 포함되어야 한다)